

1. 개정이유

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

2. 주요내용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(안 제11조제1항제1호)

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제6호 및 제7호”를 “제6호, 제7호 및 제8호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라목6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) 기생충 및 기생충란

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의 기호(*) 중 “프탈레이튬류(7종):”을 “프탈레이트류(7종):”으로 하고, 같은 뒤쪽 나목 중 “기생충란”을 “기생충 및 기생충란”으로 하며, 같은 뒤쪽 기호(*) 중 “프탈레이튬류(7종):”을 “프탈레이트류(7종):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외한다), 제2호, <u>제6호 및 제7호</u>의 시설	----- <u>제6호, 제7호</u> <u>및 제8호</u>----- -----
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